

「2024년 포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」 공고

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부합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포항시 내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
2024년 03월 07일

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4년 포항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포항시 내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창업 후 수소전문기업 요건이 되지 않은 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 도모
- 사업내용 : 기술사업화, 우수제품의 판로개척, 컨설팅 등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
- 지원대상 :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포항시 내 소재하는 기업
- 지원분야

지원분야		지원기업
수소 산업	수소 생산	- 부생/추출 수소의 고순도 수소생산을 위해 혼합가스를 정제·개질하는 기업 - 전력을 공급하여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(수전해 관련 소재 및 부품)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업 - 수소생산 관련 설비 및 인프라 시설 구축 가능 기술 기업
	수소 유통	- 수소의 운송·저장을 위해 단거리 파이프라인 제작 설치 기술 기업 - 소재 개발, 장거리용 고압저장용기 개발, 대용량 수송 가능한 액화수소 생산 기술 기업
	수소 충전	- 수소 충전소 설치, 운영,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기술 보유 기업
수소 응용 분야	수소 모빌리티	- 수소 모빌리티 활용이 가능한 부품, 공정, 생산 기술 보유 기업
	수소 활용	- 건물용,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(SOFC, PEMFC) 기술 기업 - 스택(전해질, 촉매, GDL, Encloser, Endplate, 분리판 등) 기술 기업 - 개질기(촉매, 용기, 버너 등) 기술 보유 기업 - E-BOP(전력변환장치, PLC, Harness 등) M-BOP, 공정 최적화, 기구 설계 및 유동 해석 등의 기술 보유 기업

II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금390,000,000원(금삼억구천만원)
- 지원기간 : 2024.03.~2024.11.15(8개월)
-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
 - (예비)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: 총 390,000천원(지원 최대 5개 기업)
 - 지원금액 :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내에서 차등 지원

지원명	지원 내용		지원규모
	지원유형	지원 범위	예산(천원)
사업화 지원	홍보물 제작	- 홈페이지 제작, 홍보자료 제작, 제품디자인 개선 등	기업당 최대 5,000
	전시회	- 전시회 참가비, 부스설치비, 유틸리티사용료, 통역비, 전시품 운송비 등	기업당 최대 10,000
기술개발 지원	시제품 제작	-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견본품·시약·재료비, 제작비 (외주가공비), 장비·기자재 임차비 등	기업당 최대 65,000
	지식재산권	-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출원비 및 특허법인(변리사) 대행/관납료 등	기업당 최대 2,000
	인증 획득	- 제품인증 등 국내외 공인인증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	기업당 최대 20,000
(獨)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계 기술개발 지원	연료전지 소재·시스템 연구개발	- SOFC, SOEC 등에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 연구 등 - PEMFC와 Alkaline 수전해의 시스템 성능향상 연구 등 - 시제품제작, 인증/지식재산권, 애로기술 해결 등	기업당 최대 100,000

(신청요건)

- ①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포함시 내 소재하며,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업
 - 매출 10억 이상으로 수소 분야 관련 기술 투자 및 제품 매출 실적 보유 기업
 - 수소전문기업선정 기업
 - 수소분야 관련 사업 확대 또는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
- ② 지원프로그램은 2개 이상 구성하여 신청 필수 (각 지원유형 별 사업계획서 작성)
프로그램 구성 예시 : (1) 사업화지원 + 기술개발 지원 또는 (2) 연구소 연계 기술개발 지원 + 사업화지원
※ 프라운호퍼 연구소 연계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개발지원은 구성 불가
- ③ 지원예산 범위 내,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(금액조정)
- ④ **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연계 기술개발 지원은 프라운호퍼연구소 60% 이상 : 지원기업 40% 이하 비율로 사업비편성 필수(사업내용에 따라 비율 조정 될 수 있음)**
- ⑤ **연구소 연계 기술개발지원 사업 신청 전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필수**
- ⑥ **민간부담금 현금 10% 이상 (우선집행) 필수 매칭** (※ 민간부담금 미집행시 사업비 환수)

< 민간부담금 예시 >

▶ **지원금 1천만 원 경우**

(단위 : 원)

구분	총사업비	지원금	기업부담금
금액	11,111,200	10,000,000	1,111,200
비율	100%	최대 90%	10% 이상

□ **지원방식**

- 직접지원 (포항TP → 지원기업 직접 지급)
-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→ 협약체결 → 1차/2차 지원금 지급

□ **지원방침**

- 지원예산 범위 내, 평가 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
- 민간부담금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 항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
- 동일한 지원사업 아이템으로 타 사업 동일유형 중복지원 불가

Ⅲ 신청 및 접수

□ 모집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주간

□ **신청방법**

-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(<https://www.ptp.or.kr/>)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 ※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(hwp)으로 업로드 필수
-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·반환 불가
- 전산 등록 마감일 18:00까지 온라인 제출(마감 시간 도착분에 한함)
- 공모 결과 지원기업의 수가 미달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
- 전산 등록 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

□ **제출서류**

- 지원신청서* 및 기타 증빙자료

No	서식명	해당여부
①	사업계획서 1부, [서식 제1호]	필수
②	기업부담금 현금출자 약속서 1부, [서식 제2호]	필수

No	서식명	해당여부
③	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1부, [서식 제3호]	필수
④	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, [서식 제4호]	필수
⑤	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원본 1부, [서식 제5호] ※ 해당 사업 참여인력마다 각 1부 제출	필수
⑥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	필수
⑦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※ 2024년 2월 22일 이후 발급분 제출	필수
⑧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※ 영리기관(기업)에 한하며,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' 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.세무사 확인본)' 원본을 제출	필수
⑨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기업확인서 원본 각 1부 ※ 2024년 2월 22일 이후 발급분 제출	필수
⑩	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	필수
⑪	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	공통

※ 지원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IV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추진 절차



※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, 지원기업 미달 및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평가

단계	내용	평가자
1단계	서류평가(제출서류 적정성 검토)	포항TP 사업 담당자
2단계	발표평가	외부전문가 5인

- 서류평가

- 과제 중복성, 지원분야 및 자격 해당 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
 - ※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, 수행기관·책임자 자격 유무, 중복과제 지원 준수 여부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, 신청서류 구비여부 검토 등을 통한 선정평가 대상과제 평가
-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 기회를 부여
 - ※ 서류평가 후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서류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

- 발표평가

- 발표평가 시간 : 30분(발표 20분, 질의응답 10분)
 - ※ 발표평가 시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
- 평가위원 구성: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.평가
-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

□ 선정기준

- 최종선정: 발표평가 점수 득점자 순으로 결정
- 점수산정: 평가의견서 평가 배점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
-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□ 선정평가 지표

- 서류 평가

- 지원제외대상 항목 및 과제 중복성, 제출서류 검토
- 과제중복성검토 결과 80% 이상 중복과제 대상 평가대상 제외
- 서류평가에 통과된 과제에 한하여 발표평가 진행

- 발표평가

-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평가, 70점 이상 통과
- 지원 적합성, 재무 건전성, 기업 성장성 등 평가
 - ※ 동점자 발생 시 '지원 필요성', '계획의 적정성' 순 항목이 높은 기업 우선순위로 선정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일반현황 (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※ 해당 사업 관련 기술 및 아이টে에 한함 	5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(재무평가) 	5
지원 필요성 (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애로사항의 명확성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	30
계획의 적정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의 타당성, 추진일정,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	15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	10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, 사업비 집행계획 	15
결과 활용계획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발전 기여도 향후 계획의 적정성 	20
합 계		100

□ 평가 세부 계획 및 운영 방안

-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, 사업비편성,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
- 신청 과제에 대한 발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과제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
-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,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대상 수 및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

□ 신청제한

- 사업내용이 지원목적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기업이 부도, 휴.폐업 상태인 경우
- 국세.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
-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
- 개인회생.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%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,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
 - ※ 접수 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
- 외감기업의 경우,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’인 경우

<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>

- ▶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,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,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)를 제출해야 함
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既 지원된 경우(유사한 경우 포함)
-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既 생산·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□ 지원제외

-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 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
-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
-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‘기업’의 경우, 지원금의 100%에 대해 협약 전 이행(지급)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(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인정)
-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
- 지방보조금법 및 하위법령,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,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(재)포항테크노파크 규정
 - ※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
VI 선정기업의 의무

-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※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 예정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, 현장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VII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적용됨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 - ※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어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(확인필수)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 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지원사업 참여제한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VIII 문의처

문의처	연락처	E-mail
그린에너지센터 수소팀	054-223-2256	sym94@ptp.or.kr